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1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이인영 · 이기현 · 이정문

김영환 · 전진숙 · 소병훈

문진석 · 강준현 · 채현일

김성희 의원(10인)

제안이유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 주식 수의 50%+1주를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 구조 조정의 위축 우려 및 IMF의 폐지 요구 등으로 1998년 폐지되었음.

그러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인이 피인수인에게 지불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모든 주주에게 공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인수자에게만 귀속되고 있으며, 지배주주 역시 주식 양도 시 별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받을 수 있음에 따라 주가를 높게 유지할 유인을 적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수권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

고 있으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회수의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회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주식등을 선행매수한 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등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안 제133조제4항).
- 나.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도록 하고,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안 제134조제5항 및 제141조제2항).
- 다. 선행매수를 한 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선행매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5조제2항 ·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주식등을 최대주주로부터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 자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식등의 총수에서 매수등을 한 주식을 뺀 잔여 주식등에 대하여 공개매수(이하 이 절에서 “의무공개매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등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등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무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의무공개매수자”라 한다)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 중 “대항공개매수”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 대항공개매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개매수자”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매수자”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의무공개매수자는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 하여야 한다.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행매수를 한 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선행매수한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33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행매수한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제2항제9호 중 “제141조를”을 “제1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45조제19호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446조제26호 중 “제145조”를 “제145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행매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주식등을 최대주주로부터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 을 한 자는 본인과 그 특별 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 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 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 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그 주식등의 총수 에서 매수등을 한 주식을 뺀 잔여 주식등에 대하여 공개매 수(이하 이 절에서 “의무공개 매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u>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 ④ (생략) <u><신설></u>	<u>2조제7호에 따른 부실장후기 업의 주식등을 매수등을 하 는 경우</u>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 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 등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매수등의 목적, 유 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 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3항 및 제4항----- ----- ----- -----.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무공개매수공고를 한 자 (이하 “의무공개매수자”라 한다)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여야 한다.
--	--

를 철회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② 공개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 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

-----.

1. 2. (현행과 같음)

② 의무공개매수자는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 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① 제133조제3항·제4항-----

-----.
② 선행매수를 한 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선행매수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33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

	<u>3항</u> ----- -----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5조(벌칙) ----- ----- ----- -----.
1. ~ 18의4. (생략)	1. ~ 18의4. (현행과 같음)
19. <u>제133조제3항</u>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19. <u>제133조제3항·제4항</u> ----- ----- -----
20. ~ 48. (생략)	20. ~ 48.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6조(벌칙) ----- ----- ----- -----.
1. ~ 25. (생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u>제145조</u> , 제150조제1항·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6. <u>제145조제1항·제3항</u> ----- ----- ----- -----
27. ~ 64. (생략)	27. ~ 64. (현행과 같음)